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3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2. 11.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1. 17.

경제도시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기후환경과장)
- 제출일자: 2022. 11. 4.(금)
- 회부일자: 2022. 11. 4.(금)
- 검토기간: 2022. 11. 4.(금) ~ 11. 8.(화)

2. 제안이유

- 유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공공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원활한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조정(안 별표 수정)
 - 기본(750ℓ 까지): 16,770원 → 18,900원
 - 초과(100ℓ 마다): 1,460원 → 1,640원
 - 지하할증 수수료: 청소수수료의 7%
- ※ 지하할증은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대행업체에서 별도의 청소장비(펌프 등) 설치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41조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2022. 10. 4. ~ 10. 25.): 의견없음
- 행정규제 심사결과: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원안 동의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조례·규칙 심의결과: 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업체가 종사자의 인건비 상승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차량운행비 증가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고, 2021년 대구시 주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조사 용역결과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0년 1월 인상 후 현재까지 동결상태인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대구시의 원가조사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기본 750ℓ 수거 시 기존대비 12.7%를 인상하고, 초과 100ℓ 마다 12.3%를 인상하였으며,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대형업체에서 별도의 청소장비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청소수수료의 7%를 추가 부과하는 지하할증 수수료를 신설 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운영상 어려움이 다소 해결되어 구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과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7조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기본(750ℓ까지)	18,900원	-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10원/10ℓ)가 포함된 금액임 - 지하할증은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대행업체에서 별도의 청소장비 (펌프 등) 설치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함
초과(100ℓ마다)	1,640원	
지하할증	청소수수료의 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7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15%;">수수료</th> <th style="width: 7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기본(750ℓ까지)</td> <td style="text-align: right;">16,770원</td> <td rowspan="2">「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10원/10ℓ)가 포함된 금액임.</td> </tr> <tr> <td>초과(100ℓ마다)</td> <td style="text-align: right;">1,460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수수료	비 고	기본(750ℓ까지)	16,770원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10원/10ℓ)가 포함된 금액임.	초과(100ℓ마다)	1,460원	<p>[별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7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15%;">수수료</th> <th style="width: 7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기본(750ℓ까지)</td> <td style="text-align: right;">18,900원</td> <td rowspan="2">-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10원/10ℓ)가 포함된 금액임</td> </tr> <tr> <td>초과(100ℓ마다)</td> <td style="text-align: right;">1,640원</td> </tr> <tr> <td>지하할증</td> <td style="text-align: right;">청소수수료의 7%</td> <td>- 지하할증은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대행업체에서 별도의 청소장비 (펌프 등) 설치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함</td> </tr> </tbody> </table>	구 분	수수료	비 고	기본(750ℓ까지)	18,900원	-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10원/10ℓ)가 포함된 금액임	초과(100ℓ마다)	1,640원	지하할증	청소수수료의 7%	- 지하할증은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대행업체에서 별도의 청소장비 (펌프 등) 설치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함
구 분	수수료	비 고																		
기본(750ℓ까지)	16,770원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10원/10ℓ)가 포함된 금액임.																		
초과(100ℓ마다)	1,460원																			
구 분	수수료	비 고																		
기본(750ℓ까지)	18,900원	-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10원/10ℓ)가 포함된 금액임																		
초과(100ℓ마다)	1,640원																			
지하할증	청소수수료의 7%	- 지하할증은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대행업체에서 별도의 청소장비 (펌프 등) 설치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함																		

【 관 계 법 령 】

□ 「하수도법」

-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2013.7.16>
- 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9.12.01 조례 제826호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1117호
(일부개정) 2017.11.21 조례 제1263호
(일부개정) 2020.01.02 조례 제141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라 분뇨의 원활한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할 수 있다.

제5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업구역
2. 영업대상과 대행기간
3.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청소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자동차 확보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①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분뇨처리 수수료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11. 21)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

제8조

삭제(2017. 11. 21)

제9조(행정 협의) 구청장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정 협의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보고·검사)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처리 등의 실적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2017. 11. 2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달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5.12.31. 조례 제1117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11.21.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 1. 2. 조례 제1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5. 12. 31., 2020. 01. 02.)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7조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기본(750ℓ까지)	16,770원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10ℓ/10원)가 포함된 금액임.
초과(100ℓ마다)	1,460원	